

마틴 報告書에 대한 意見書

관 장 이 만 갑

이 意見書는 1972年 4月 3日에서 4月 15日에 이르는 期間에 새로운 서울大學校 圖書館建設計劃을 發展시킬 目的으로 來校한 바 있는 루이스·이·마틴氏가 서울大學校 圖書館의 組織과 人員構成을 檢討하여 作成한 Louis E. Martin 報告書에 대한 意見을 記述한 것이다. 이 意見書는 마틴報告書에 적혀 있는 內容의 順序에 따르기로 한다.

차 례

1. 緒 論
2. 大學圖書館의 綜合化
3. 專門職司書
4. 圖書館長
5. 副館長
6. 藏書擴充擔當官
7. 整理部
8. 運用部
10. 書誌調查課
10. 庶務課
11. 韓國의 國立圖書館과 情報體制에의 指向
12. 마틴報告書에 대한 綜合的意見

1. 緒論(Introduction)

마틴報告書의 緒論에서 지적되어 있는 事項에 대하여는 全적으로 同意한다. 그는 現在의 서울大學校 圖書館(主로 附屬圖書館을 가리키지만 分館까

지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다)이 한심한 條件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 大學圖書館이 大學에서의 教育和 研究에 더 積極的으로 即應하는 機關이 되기를 促求하고 그를 위해서 신중한 檢討를 加하여 많은 傳統的方式을 버리는 同時에 外國의 現代圖書館의 效果的인 運營方式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 大學圖書館의 綜合化(Centralization)

마틴 報告書는 大學圖書館의 藏書, 奉仕, 行政의 機能을 單一組織體로 綜合化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綜合化의 長點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圖書館을 中央에 綜合하는 데에는 計劃만 가지고는 안되며 教授들에 대하여 설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農大와 醫大에 分館을 두는 것은 좋으나 그 以外의 建物에는 小規模의 圖書室조차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本人은 原則的으로 찬성하나 다음과 같은 異見을 갖는다.

가. 이 綜合化는 教授들의 協力如何에 따라 成敗가 달려있다. 그러므로 事前에 教授들에게 綜合化의 必要性을 설득하는 活動을 積極的으로 展開해야 한다.

나. 各學科(Department)에 圖書室을 設置하는 것은 排除되어야 하겠지만 貸出保留指定圖書館(Reserve System)을 活用하여 똑같은 書籍이 여러 帙이 있을 경우의 複本 또는 다른 學科에서는 絕對로 必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書籍등은 그 學科에 長期貸出하는 것이 必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現在의 備置制度를 약간 修正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 本館과 農大, 醫大의 分館과의 調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研究해야 할 問題이지만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原則을 취하는 것이 요긴하다고 생각한다.

(1) 分館司書業務를 담당하는 人員의 任命, 轉補, 昇進等 人事는 圖書館長이 장악한다.

(2) 分館豫算의 配定은 圖書館長이 담당하며 豫算執行은 各分館에서 담당한다.

(3) 圖書購入은 分館이 獨自的으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4) 圖書의 整理方式, 貸出方式等 司書業務의 主要 原則은 本圖書館의 事前承認을 얻도록 한다.

3. 專門職司書(Professional Library Staff)

마틴報告書는 서울大學校圖書館에 有能한 司書가 結缺되어 있고 그것이 圖書館의 發展을 심히 阻害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司書의 地位가 낮고 待遇가 나쁘다는 것과 司書職은 高校卒業程度로서 短期訓練을 받으면 수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通念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을 是正하기 위해서 마틴은 다음 세가지 사항을 建議하고 있다.

가. 司書職은 學士와 적어도 하나의 碩士學位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나. 圖書館職員의 構成에 있어서는 專門職司書를 확보하도록 변경되어야 하며 專門職司書는 모든 職級에 있어서 優位를 차지해야 한다.

다. 專門職司書의 數는 비교적 적어도 된다. 專門職司書는 司書業務와 情報科學에 關한 理論的 知識을 갖추고 藏書發展 (Collection Development)과 같은 더 複雜한 圖書館業務에 關해서 重要的 管理的技能과 經驗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마틴의 意見에 대해서 原則적으로 贊成하나 過渡적으로 現實的인 隘路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첫째로 專門司書業務를 담당할 만큼 정규 훈련을 받은 司書專門家가 韓國에 많지 않다는 點, 둘째로 司書가 되기 위한 정규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만족스러운 교양과 資質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點, 그리고 셋째로 司書職의 地位를 向上시키고 적절한 報酬를 지급하는 制度를 가까운 시일내에 確立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點에서 그렇다.

마틴이 제시한 原則을 따르기는 당장 어려운 點이 있다고 하더라도 加급적 그 原則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措置가 必要할 것으로 생각한다.

(1) 司書職의 地位를 올리고 적절한 報酬를 줄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해야 한다.

(2) 司書職은 專門職司書와 一般司書로 區分하고 專門職司書를 上位職級에 任命하여야 한다.

(3) 司書職의 經歷發展(Career Development)의 方案을 마련하여 圖書館業務에 關連된 다른 分野에서도 活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必要하다.

(4) 司書職에 대한 政府의 給여제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限 實質적으

로 그들에 대한 物質的待遇가 向上되도록 期成會費로써 專門職手當을 支給하거나 혹은 다른 적절한 方法을 講究해야 한다. 이것은 극히 긴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圖書館業務를 發展시키려면 우수한 司書를 確保하거나 現在 있는 司書要員을 訓練시켜야 하는데 待遇가 나쁘면 우수한 司書가 오지 않을 뿐더러 키워 놓은 사람마저도 離職 또는 轉出하기 때문이다.

(5) 學部에 圖書館學科를 둘 필요는 없지만 大學院課程에 圖書館學科 또는 圖書館學專攻 코오스가 設置되어 높은 資質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教育에 종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要望된다.

(6) 現在의 司書要員의 資質과 能力을 向上시키기 위해서 自體內的 短期訓練 (on-the-job training)을 強化하는 同時에 그들이 海外的 圖書館을 視察하고 또는 圖書館學을 공부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必要하다.

4. 圖書館長

마틴報告書는 教授職에 있는 사람을 館長으로 兼任케하고 있는 지금의 制度를 是正하여 早速한 시일내에 司書專門家를 任命하는 體制로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는 圖書館이 大學의 教育과 研究에 即應해야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圖書館長은 University Council (大學校運營委員會) 또는 學處長會議 (Administrative Committee)와 같은 大學의 最高政策樹立機構의 一構成員이 되어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總長에게 直接的으로 責任을 져야하며 任期는 5年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教授가 館長을 겸하는 現制度를 당장 고치기 어렵다는 현실적 조건을 理解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에 副館長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代案을 提示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本人은 마틴의 意見에 全的으로 同意한다. 特히 館長이 大學의 最高政策決定機構에 참여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任期를 5年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任期를 5年으로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없기 때문에 4年이라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5. 副館長

마틴에 의하면 館長이 司書專門家가 아닐 경우 副館長은 꼭 必要하다고 보고 있다. 副館長은 經驗있는 學問的 司書專門家라야 하며 理想的으로는 圖書館學과 다른 또하나의 學問分野에서 두개의 大學院 碩士學位를 가진 사람

이 좋다고 보고 있다. 그는 副館長이 圖書館內의 日常的인 業務執行에 責任을 져야하며 副館長을 2名을 두는 것에는 강력히 反對하고 있다. 그러나 奎章閣圖書에 대해서는 별도로 責任者 (Curator; 奎章閣館長 또는 室長)를 두고 이에 대해서는 副館長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本人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가. 現在와 같이 圖書館에 관한 專門的知識과 經驗을 가지고 있지 않은 教授가 館長을 겸할 경우 司書專門家인 副館長을 두는 것은 原則的으로 必要不可缺한 일이다. 特히 서울大學校가 綜合計劃에 의하여 새로운 캠퍼스로 옮겨갈 경우 館長이 圖書館의 組織, 管理, 人員, 機材等に 관해서 精確한 知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致命的인 缺點임에 틀림없으므로 副館長制를 新設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 그러나 적절한 副館長을 發見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때문에 現實的으로 어려운 일이다.

(1) 副館長의 責務를 수행할만한 상당한 知識과 經驗을 가진 權威者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2) 外國의 圖書館內容에 관해서는 잘 알지만 大學에 있어서의 學問과 研究에 관해서 잘 모르면 지나치게 原理에 치우쳐서 本圖書館의 實務者와 大學教授들과 잘 調和가 되기 어려운 點이 있을 수 있다.

(3) 副館長職에 滿足하지 않고 圖書館學의 教授職에 關心을 가질 可能性이 있다.

다. 可及的 適切한 사람을 선택하여 副館長으로 任命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上記한 點을 고려하여 現實的으로 適格者를 求하기가 어렵다면 暫定的으로 副館長은 아니라도 館長을 補佐할 수 있는 자리에 任命함으로써 圖書館에 관한 專門的 知識이 不足한 館長의 결함을 補充하도록 하는 次善策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마틴報告書에는 奎章閣責任者의 地位와 役割 그리고 奎章閣圖書業務를 수행케 될 組織에 관해서 자세한 言及이 없지만 이에 대해서는 더 깊은 研究와 計劃이 必要하다.

마. 館長, 副館長이 海外의 圖書館을 視察할 必要性을 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圖書館의 建設을 計劃해야 할 現時點에서 볼때 特히 긴요한 일이며 可及的 빠른 時日內에 實行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6. 藏書擴充擔當官(Collection Development Officer)

마틴은 이 報告書에서 有能한 專門職司書로 하여금 圖書館藏書의 擴充發展을 위한 計劃과 收書및 除籍에 대한 最終的인 責任을 질 藏書擴充擔當官制度를 두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本人도 그의 意見에 贊同하는 바이다.

그러나 實際 業務遂行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게 될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 藏書擴充擔當官이 차지하는 業務內容이 收書課長의 그것과 大同小異하여 그를 補佐하는 下部組織이 不可避하게 될 것이다.

나. 藏書擴充擔當官制度를 둔다면 그는 누구의 命令을 받아야 하며 最終的으로 누구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지가 애매하다.

다. 整理部에 예속되어야 하는 收書는 藏書擴充擔當官이 있게 되면 收書擔當者는 所屬課長과 擔當官의 二重의 命令을 받게 될 것이다.

라. 잘 훈련된 有能한 司書라 할지라도 一個人의 能力으로써 大學圖書館이 必要로 하는 全分野의 學術書籍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學術圖書의 수집에는 教授의 절대적인 協力이 要請되는 바이며 또 그 計劃에는 合議體인 圖書選定委員會같은 것이 必要하게 된다.

바. 現行法上 도서폐기의 權限은 기관장인 物品管理官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藏書擴充擔當官은 獨自的으로 도서를 폐기할 수 없다. 따라서 有名無實한 結果가 되기 쉽다.

사. 그러나 이 藏書擴充擔當官制度의 設置에 관한 그의 意見은 注目할 만한 提言인 것으로 보아 좀 더 두고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7. 整理部 (Technical Service Section)

잘 訓練된 經驗많은 專門職司書로서 그 責任을 맡게하고 整理業務와 함께 그것과 關係되는 業務인 收書業務(Acquisition)와 製本業務(Binding)를 整理課 밑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마틴의 建議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 이와같이 한다면 整理課의 業務는 너무 過多하게 되고 課長 1人의 統率範圍가 지나치게 넓게 된다.

나. 그러므로 業務를 收書業務와 整理業務로 다음과 같이 分化하여 責任을 分擔시켜야만 오히려 能率的인 業務遂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1) 收書課
- (2) 東書整理課
- (3) 西書整理課
- (4) 綜合目錄課

8. 運用部 (Readers Service Section)

마틴이 提議한 運用部の 組織에 대하여는 本人도 찬성한다.

그런데 그 下部組織은 資料別 業務內容別로 다음과 같이 細分化되어야 할 것이다.

1. 閱覽課
2. 藏書課
3. 參考書誌課

9. 參考書誌課 (Department of Reference and Bibliographic Service)

現在の 調査課와 參考業務를 合하여 參考書誌課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틴의 提言은 그 機能이 共通되기 때문에 充分히 理解하고 받아드릴만한 것이다.

다만 參考書誌課를 閱覽課밑에 두어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理解키 어려운 몇가지 문제가 있게 된다.

가. 參考書誌課를 係單位로 본다면 그 業務量은 너무 많아진다.

나. 또 이것을 課單位 以上の 業務로 보는것이 大圖書館의 組織인데 그렇다면 閱覽課는 局以上の 位置에 있어야 할 것이다.

10. 庶務課 (General Affairs Section)

마틴의 報告書에 의하면 庶務課의 組織은 現在와 같이 11名 정도로 充分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本人도 原則적으로 贊同하는 바이다. 앞으로 業務量의 增大를 감안할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는 고려되어야 한다.

가. 一般行政과 施設管理業務의 本部統合化.

나. 圖書館運營에 따르는 諸般企劃과 涉外業務를 위하여 館長秘書陣의 強化.

위의 두가지 條件이 解決되리라는 前提下에서는 그의 提案은 받아 들일만 하다고 본다.

11. 한국의 國立圖書館과 情報體制確立에의 指向

마틴은 한국의 國立圖書館制에 對하여 이 報告書에서 서울大學校 圖書館은 學術資料의 蒐集과 情報의 提供을 위하여 主要한 役割을 擔當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는 國立圖書館과 情報提供을 위한 組織의 發展을 위하여 向後 12個月內에 關係 圖書館長은 會合을 가지고 보다 效果的인 方法을 결정 할 것을 建議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國立圖書館이라는 概念은 學術的 奉仕機能面으로 본 國家의 代表的 圖書館을 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國家에 依하여 設置運營되는 現在 各種 國立圖書館을 統合한 새로운 圖書館을 뜻하는 것인지 不分明하다. 萬一에 後者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의 提言은 매우 理想的이며 고무적인 것으로 느껴지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難問題가 있기 때문에 그 實現은 매우 難望하다고 본다.

가. 國立中央圖書館, 國會圖書館 기타 政府機關의 圖書館은 다 國立일 지라도 各其 그 設立機關이 다르며,

나. 現實的인 面에서 볼때 이들 圖書館을 합친 機構統合이나 藏書의 統合은 法律上으로도 實際的으로도 問題가 적지않은 것으로 보며,

다. 現在 國立圖書館과 國會圖書館이 統合을 이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라. 國立圖書館의 奉仕對象이 全國民인데 反하여 서울大學校 圖書館의 奉仕對象은 이 大學의 教授, 職員과 學生이며,

마. 이와같은 諸問題를 떠나서 生覺한다고 해도 마틴의 建議를 받아 들이는 매우 어렵다고 보며 이 問題는 보다 높은 次元 즉 政府의 機構統合을 위한 審議機關에서 論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12. 마틴 報告書에 대한 綜合的 意見

以上 마틴의 報告書를 分析檢討하여본 바 매우 進取的인 建議라고 믿는바이며 따라서 그의 提言대로 될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本人의 간절한 所望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實的인 立場에서 볼 때 조속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몇가지 있는 바,

가. 專門職司書를 館長으로 任命하는 문제.

나. 관악 캠퍼스에 移轉함과 同時에 모든 部署에 잘 訓練된 司書로써 充員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다. 特히 國立圖書館과의 情報體制의 一元化問題 등이다. 그리고 司書의 質的 向上을 위한 訓練 및 海外派遣問題와 司書의 待遇問題는 훌륭한 司書要員의 確保를 위하여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고 實現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마틴의 報告書에서 注目되는 바는 圖書館業務分掌에 따르는 機構組織인데 그는 組織區分에 있어서의 單位를 Section으로 記述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 行政組織上의 單位인 局, 課, 係를 明確히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問題는 더욱 具體的으로 圖書館業務가 分析되어 새로운 組織機構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